

약관변경대비표

1. 약관명 : 『계좌간자동이체 약관』
2. 변경 시행일 : 2016년 6월 7일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주요 변경내용 : (구)외환은행 약관에 통합 신규 반영하여 구행명 삭제후 통합약관으로 개정

(구)하나은행 관련 약관 변동없음

개정 전(구.외환은행)	개정 후	비 고
<p>제1조(자동이체방법) 은행은 거래처의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입금계좌로 넣는다.</p> <p>제2조(지급자금부족 때의 처리)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회전대출한도 설정금액 포함)이 이체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대출금이자 이체시는 출금계좌에 입금액이 발생할 때마다 이체처리하며 마지막 이체일로부터 8개월 이상 이체처리되지 않을 때는 자동이체 처리가 중지된다. ② 적립식수신의 적립액 이체시는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을 초과하는 날에 이체처리한다.</p> <p>제3조(여러 건의 이체처리) 같은 날에 이체대상이 여러 건 있는 때 이체처리 순서는 여신원금이자상환, 외환카드대금, 금융공동망이체, 아파트관리비, 후취수수료, 계좌간자동이체, 기타 신용카드대금 순으로 처리한다. 다만, 동일 항목내 순서는 기관 요청 순서에 따르며, 이체 처리중 입금이 된 경우에는 이체처리순서가 변경될 수 있다.</p> <p>제4조(증권의 부도) 거래처의 출금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자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한다.</p>	<p>제1조 약관의 적용 예금주가 하나은행계좌간 이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급표를 징구하지 않고 정해진 기일에 계정간에 이체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p> <p>제2조 영업일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p> <p>제3조 신청, 변경 및 해지 ① 이체지정일 2영업일전까지 자동이체 신청서 또는 전자금융을 통하여 신규 및 변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입금계좌는 당좌, 가계당좌,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 MMDA, MMF, 수익증권, 적립식예금(신탁), 대출계좌 등입니다</p> <p>제4조 출금 ①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②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 처리됩니다.</p>	(구.하나은행 약관과 일치. 통합약관으로 개정)

<p>제5조(신청내용의 변경·해지신고) 거래처가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 신청하는 경우 서면신고해야 하며 그 효력은 다음 영업일 부터 발생한다.</p> <p>제6조(이체일 및 이체금액 미지정 때 처리)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채무 등 이체 대상만을 지정하고 이체일 및 금액에 대한 지정 없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는 은행은 그 대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체한다.</p> <p>제7조 계좌이동서비스</p> <p>① 계좌간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p> <p>② 은행은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www.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p> <p>③ 고객은 은행지점, 홈페이지(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www.payinfo.or.kr)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④ 고객이 은행지점, 홈페이지(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p>	<p>③ 대출금이자, 원(리)금은 부분 인출 가능합니다. (상환 약정기일에 약정 금액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연체 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23시40분까지 입금할 경우에 당일 처리가능합니다.)</p> <p>④ 자동이체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 취소됩니다.</p> <p>⑤ 이체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이체 됩니다. 다만, 요구불계좌간자동이체는 전영업일과 익영업일중 이체일을 예금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p> <p>제5조 최초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예금주가 최초 이체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체일 및 금액에 대한 지정없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는 은행은 그 대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체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연 처리될 수 있습니다.</p> <p>제6조 과실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 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잔액증명서 발급, 연체, 법적제한 등 예금주의 과실에 의하여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p> <p>제7조 출금 우선순위 같은 날에 이체대상이 여러건 있는 때, 이체처리 순서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p>	
--	--	--

해지 후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중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 시행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며,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 은행에 신고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은행에 신고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시 즉시 은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이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9조(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약관(구 외환은행), 관련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제8조 계좌이동서비스

① 계좌간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고객은 은행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www.payinfo.or.kr)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이 은행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www.payinfo.or.kr)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 이체 해지 후,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

제9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계좌간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외에도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약관, 전자금융 거래 기본약관 관련 예금, 신탁약관 및 은행 내규를 준용합니다. 다만, 여신의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우선합니다.

개정 전(구.하나은행)	개정 후	비 고
<p>제1조 약관의 적용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p> <p>제9조 준용 (생략)</p>	<p>제1조 약관의 적용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p> <p>제9조 준용 (좌동)</p>	<p>(변동없음)</p>